

-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의 명을 받고 단기학사 장교(육·해·공군)로 근무한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가 평정대상이 됨.(※ 군 복무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하여도 경력에 포함함) 다만, 임용 전 단기 학사장교로 복무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실역기간만 평정대상이 됨.(교육부 교정01210-1213, 1994.12.6, 승진규정 개정에 따른 인사업무 처리 관련 유의사항 통보)
- 장기 복무자(하사관 이상 장교로 근무한 자도 3년 범위에서 인정)
- 무관후보생(현역의 사관생도, 사관후보생, 준사관후보생, 하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을 말함)은 군복무 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함. 따라서 교대 출신의 예비역 하사관 후보생(RNTC)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에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·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 복무 경력에서 제외(단,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을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함)
- 사회복무요원(방위소집 복무자, 공익근무요원 포함)은 다음 기간을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함
  - 1986.1.1. 이후에 사회복무요원(방위소집 복무자, 공익근무요원 포함) 입영한 자는 법령상 복무 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
  - 1985. 12. 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실역 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 사유가 만기인 경우에는 1년을, 기타 복무단축사유(의가사, 질병사유 등)로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합산 대상기간으로 하며, 6월 미만인 실역 미필 보충역은 군 경력이 없는 것으로 함(단, 6월 미만 복무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인정함)
- 의무·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4조 및 전투경찰대 설치법,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 특례로서 군복무 경력으로 갈음함
- 특례보충역(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)으로 방위산업체(병역특례업체)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역증명서에 실역 복무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 기간으로 불인정함

마.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대통령 특별 사면령에 의거 사면된 경우는 경력평정에 포함하여 계산한다.

바. 승진규정 [별표1]의 평정 대상 경력 중 대학교원의 범위에 고등교육법 뿐만 아니라 특별법 또는 개별설치령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은 포함하되, 경찰대학의 경찰학과정, 육·해·공군사관학교·국군간호사관학교·육군3사관학교의 군사학과정, 국방대학원의 비학위 과정 등 교원자격기준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의 관련 규정 준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의 담당 교원의 경력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.(교원정책과 -505, 2008.02.12.)

사. 경력평정표 기록 시 최근경력부터 위에서 아래로 기록한다.

(예) ○○고등학교(교감)	2021.03.01. - 2026.02.28.
○○고등학교(교사)	2016.03.01. - 2021.02.28.

아. 경력평정에 있어서 평정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,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.

자. 경력평정점 산출에 있어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소수 넷째자리까지 계산하고, 이를 합하여 합계에는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자리까지 낸다.(승진규정 제10조제2항)